

14.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1998-580호 1998. 12. 10

개 정 이 유

건축행정의 정보화 추진에 따라 전산화를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건축법령에서 전문가 영역에 속하는 기술적인 사항을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분리하여 건축법령을 알기 쉽게 하며, 설계도서의 관리·건축물에 건축재료의 사용에 대한 규제등을 폐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주 요 골 자

- 가. 건축행정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건축행정의 전산화에 필요한 관련서식을 정비함.
- 나. 용도변경허가, 대형건축물의 시·도지사 허가전 승인제도가 건축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함.
- 다. 설계도서의 관리, 계단의 구조기준, 건축재료의 품질, 특별개발사업구역의 기본계획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주택희보